

# 캘리포니아 법률 다음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합니다 인신매매



# FAQ

캘리포니아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인신매매는 현대 노예제도의 한 형태이며 민형사법을 위반합니다. 시민권부(CRD)는 캘리포니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인신매매 혐의가 있는 민원을 접수, 조사, 중재 및 기소합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일명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을 인신매매로부터 보호합니다.

## 1 |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인신매매”와 “현대 노예제”는 포괄적인 용어로, 종종 혼용되며, 노동을 강요하거나 상업적인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착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강제 노동이나 용역, 상업적 성관계, 또는 음담패설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착취하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인격적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사람이 인신매매 연루된 것입니다. 이것은 민형사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무력, 두려움, 사기, 속임수, 강요, 또는 상해의 위협을 통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는 일반적으로 성매매와 노동매매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2 | 성매매란 무엇입니까?

강제 성행위라고도 알려진 성매매는 다른 사람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하거나 아동(18세 미만)에게 상업적 성행위를 하게 하기 위해 폭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에 수반되는 활동의 범위입니다. 또는 더 간단히 말하면,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의 사람들이 가치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성적 행동(성행위 또는 다른 성적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들에는 돈, 머물 곳, 보호, 또는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업적인 성행위를 한 18세 미만의 사람은 강제, 사기, 강압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인신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18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정의와는 다릅니다.

## 3 | 노동 인신매매란 무엇입니까?

강제 노동이라고도 알려진 인신매매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성노동(또는 노동)이나 서비스를 착취하기 위해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된 활동 범위입니다. 노동자 인신매매는 종종 피해자들이 그들의 일에 대한 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을 포함되며, 이는 비자발적인 노예생활, 부채 속박 또는 노예제도가 발생합니다. 누군가가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대가를 받더라도 수행된 일과 관련된 강압, 사기 또는 강압을 경험한다면 여전히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4 | 인신매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타인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은 인신매매 대상자가 상업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무력, 사기 또는 강압을 사용합니다.

**강제:** 신체적 구속, 신체적 상해 및/또는 성폭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용, 임금 또는 근무 조건에 관한 거짓 약속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 심각한 해악의 위협, 심리적 조작, 문서 압수 또는 누군가를 경찰, 이민 당국 또는 기타 당국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상업 행위:** 이러한 맥락에서, 착취당하는 사람에게 금돈이나 다른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하는 성행위 또는 노동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의 예로는 머물 장소/침터 제공, 교통수단, 마약 또는 술, 어떤 형태의 보호, 직업, 음식 또는 의복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 5 | 인신매매 상황에 처했을 수도 있다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 당신이 원하는 대로 왔다 갔다 할 자유가 없습니다
- 고용, 임금, 근로 조건 등에 대한 허위 약속을 통해 부정 채용 된 것입니다
- 강제로 일을 하게 되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적은 급여를 받거나, 팁으로만 급여를 받습니다
- 당신은 누군가에게 큰 빚을 지고 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들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누군가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거나 이민국이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합니다
- 당신은 자신의 돈이나 은행 계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를 통제할 수 없거나, 서류를 압수당했습니다
- 당신은 당신 자신을 대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또는 누군가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 당신은 당신이 원할 때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할 수 없습니다
- 장시간 일을 하게 되거나 몸이 아플 때도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 신호”가 있다고 해서 귀하가 인신매매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인신매매 상황을 나타냅니다. 귀하가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는지 또는 잠재적인 노동, 고용 또는 기타 위반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에는 이동이나 국경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6 | 인신매매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신매매는 불법입니다. 그것은 민형사법 모두를 위반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당신은 지역 경찰, 지방 검사 또는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비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민권부(CRD)에 민원을 접수하여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CRD는 인신매매를 주장하는 민원을 생존자에게 대가 없이 무료로 접수, 조사, 회유, 중재 및 기소할 권한이 있습니다. 인신매매 민원은 이민 신분 와 관계없이 조사됩니다.

CRD의 인신매매 조사는 독립적이며 외부 법 집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7 | CRD에 불만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신매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불만을 제기하거나 불만 처리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CRD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민권부

[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http://calcivilrights.ca.gov/complaintprocess)

무료 전화: 800.884.1684

TTY: 800.700.2320

합리적인 수용이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 CRD는 전화로 접수 내용을 기록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의 경우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711)를 통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CRD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문의해도 좋습니다

언어 지원을 받으려면 커뮤니케이션 센터에

- 800-884-1684(음성), 800-700-2320(TTY) 또는 캘리포니아 릴레이 서비스(711)로 전화하십시오.
- [contact.center@calcivilrights.ca.gov](mailto:contact.center@calcivilrights.ca.gov) 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영업일 기준 3~5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8 | CRD에 인신매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인신매매에 대한 신고는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상황에서 해방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CRD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는 인신매매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인신매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신매매 피해자가 만 18세가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고소장을 CRD에 제출해야 합니다.

### 9 | CRD에 인신매매 신고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신매매 생존자와 경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CRD에 불만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섭취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CRD는 접수 양식의 주장을 평가하고 CRD가 시행하는 법률이 해당 주장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CRD는 집행 기관의 하에서만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불만이 조사를 위해 접수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CRD가 당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불만이 CRD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이 승인되면 CRD는 귀하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적 문제를 조사할 것입니다.

당신은 CRD의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CRD 중재자가 제공하는 분쟁 해결은 법정 외부에서 이루어지며 기밀이 유지됩니다. CRD: [calcivilrights.ca.gov/disputeresolution/](http://calcivilrights.ca.gov/disputeresolution/) 에서 분쟁 해결 및 조정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일부 인신매매 불만으로 인해 CRD가 생존자를 대신하여 제기한 민사 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불만 사항은 CRD의 시행에 따른 법 위반으로 인해 비슷한 영향을 받는 그룹 또는 계층의 사람들을 대신하여 책임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제기한 모든 불만사항이 법정에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민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고소인에게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귀하의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여전히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10 | 불만을 제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CRD에 불만 사항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 정보가 도움이 되지만 사항을 제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 귀하에게 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는 개인 또는 단체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및 기록(알려진 경우)
- 귀하의 불만 사항과 관련된 모든 문서 또는 기타 증거의 사본, 그리고
- 증인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알려진 경우)

조사의 일환으로 CRD는 다른 증인들을 인터뷰하고 문서를 확보하고 개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 도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11 | CRD에 익명으로 또는 비밀리에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익명으로 CRD에 최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D가 귀하의 불만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경우, 귀하가 이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하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고 있다면 귀하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 또는 증인이 귀하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CRD는 법적 요구 사항에 따라 귀하 또는 증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불만 사항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CRD는 귀하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비밀유지, 익명신고, 접수 일정, 또는 인신매매 고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CRD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 | CRD에 인신매매 신고서를 제기했지만 서류가 없거나 CRD 조사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신분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인신매매로부터 보호 받고 있으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CRD에 제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법적 신분이 없고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경우, 연방 정부로부터 U 또는 T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세관 및 이민국에 U 또는 T 비자를 신청할 때, 귀하가 적격 범죄의 피해자였으며 법 집행 기관이 범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법 집행 기관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CRD는 해당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에 대해 이 인증을 제공할 권한이 있습니다. CRD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CRD에 귀하 자신과 자신에 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CRD에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부서에 민원이 접수되지 않거나 공개 조사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CRD의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visacertification@calcivilrights.ca.gov](mailto:visacertification@calcivilrights.ca.gov) 로 CRD에 문의하세요.

U 비자는 미국에 있는 동안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학대를 겪은 특정 범죄의 피해자(및 그 직계 가족)를 위해 적립된 미국 비이민 비자입니다. 범죄 활동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에서 법 집행 기관 및 정부 관리를 기꺼이 도와줄 것입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피해자들이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입국하거나 미국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T 비자는 인신매매의 특정 피해자와 직계 가족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유형의 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 집행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저지른 범죄(또는 범죄)의 수사 및/또는 기소에 도움을 주기로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 13 | CRD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떤 민사 구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CRD는 또한 인신매매를 경험한 사람들의 권리를 입증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인신매매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감옥이나 감옥을 초래할 수 있는 형사소송과는 다릅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생존자는 다양한 유형의 구제 또는 구제 방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에는 “손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손해”는 민사 사건에서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인신매매 생존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불한 돈을 의미합니다.

제52.5조에 따라 이용 가능한 민사 구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 손해액
  - 승소한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 또는 손실 된 임금, 치료비 등 경제적 영향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
- 손해배상
  - 승소한 원고들이 겪은 정서적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그들에게 지급된 돈
- 징벌적 손해배상
  - 승소한 원고들에게 지급된 돈은 인신매매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금지명령 구제
  - 법원이 피고/밀매 책임자에게 어떤 행위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금지 명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3배 손해배상 또는 민사 처벌
  - 승소한 원고/인신매매 피해자는 실제 피해액의 3배(위 참조) 또는 \$10,000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입료
- 다른 종류의 구제

### 14 | 인신매매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도움과 서비스를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도움과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핫라인에서는 도움, 서비스 추천, 교육 및 일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과 서비스에 이용하거나 인신매매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국가 인신매매 자원 센터: 1-888-373-7888로 전화하거나, 문자: 무료 또는 233733, 또는

## 캘리포니아 법은 인신매매로부터 귀하를 보호합니다

라이브 채팅: [humantraffickinghotline.org](http://humantraffickinghotline.org) 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노예제 및 인신매매 폐지 연합(CAST): 1-888-KEY-2FRE(EDOM) 또는 1-888-539-2373으로 전화하세요.
- 핫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
- 무료 통화
- 비영리, 비정부 기구에서 운영
- 익명 및 기밀
- 160개 이상의 언어로 이용 가능
- 도움, 서비스 추천, 교육 및 일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가 아는 누군가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 911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피해자 보상 위원회(CalVCB)를 통해 인신매매 생존자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lVCB는 인신매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CalVCB가 환급할 수 있는 일부 비용에는 정신 건강 상담, 의료 및 치과 치료, 주택 보안 설치 또는 개선, 이주 및 손실된 임금에 대한 보상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victims.ca.gov/](http://victims.ca.gov/) 1-800-777-9229

또는 CalVCB 온라인 포털([online.victims.ca.gov](http://online.victims.ca.gov/))을 통해 지원을 신청하세요.

이 번호는 월~금 오후 8~5시까지 근무하며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남은 메시지는 4시간 또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회신을 받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CRD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방법**

**민권부**

[calcivilrights.ca.gov/](http://calcivilrights.ca.gov/) 무료 통화: 800.884.1684 / TTY: 800.700.2320

합리적인 편의가 필요한 장애가 있습니까?

CRD는 귀하의 불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의 번역을 보려면 [calcivilrights.ca.gov/posters/general](http://calcivilrights.ca.gov/posters/general) 를 방문하십시오.*